

채용행사 정보 등 홍보사항

****참여전, 일정 등의 변경 사항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

□ 2020 일본채용박람회 온라인 서울페어(5.7~5.22)

KITA 한국무역협회 일본채용박람회 Soft Engineer Society

커리어플랜의 시작

2020 상반기 Bridge JOB Fair

인사담당자가 직접 설명하는 채용기업설명회

면접 대응전략 및 개별컨설팅 Bridge Edu

Bridge JOB Fair 설명회, 내정자 교육 Bridge Camp

* 이벤트별 별도 신청

amazon Rakuten IBM 참가확정!
5월말까지 참가기업 상시 업데이트 www.bridge.career에서 확인하세요.

서울페어	도쿄페어
일시 : 2020.05.07 ~ 05.22	일시 : 2020.07.06 ~ 07.10
장소 : Seoul, COEX 및 ONLINE	장소 : Tokyo, TKP Ichigaya
지원마감 : 05.06(수) 18:00	지원마감 : 05.29(금) 18:00
사전전형 : 05.07(목) ~ 05.22(금)	사전전형 : 06.01(월) ~ 06.15(월)

☎ 02-6000-5450 ✉ info@softsociety.net

일시	2020.05.07~05.22/서울페어 2020.07.06~07.12/도쿄페어		
장소	온라인진행 및 일본 도쿄현지		
참가대상	대한민국 청년(만 34세 이하)		
행사구성	채용기업설명회, 개별컨설팅 및 채용전형		
주최	한국무역협회		
주관	Soft Engineer Society		
기업신청기간	개인신청기간	2020.05.07	
문의처	02-6000-5450	FAX	--
담당자		E-MAIL	info@softsociety.net
사이트(출처)	http://www.bridge.career		

자료출처: <http://www.bridge.career>

□ 2020 중견기업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(5.18~6.7)

2020 중견기업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05.18~06.07
방구석에서 취준부터 취보까지!

Stage 1.
라이브 채용 설명회 시청

Stage 2.
지원 서류 제출

Stage 3.
면접 영상 제출

취업성공!

방구석에서 참가하기

- 언 제 2020.05.18 ~ 06.07
- 어디서 우리 집 방구석
- 무엇을 2020 중견기업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(www.fome-job.com) 참여
- 어떻게 홈페이지 접속 > 라이브설명회 시청 05.18 > 서류접수 05.18 ~ 05.27 > 면접영상접수 05.29 ~ 06.07

산업통상자원부 FOMEX 한국중견기업연합회 IBK기업은행

일시	2020.05.18~2020.06.07		
장소	온라인홈페이지 (www.fome-job.com)		
참가대상	모든 구직자		
행사구성	사전채용설명회, 라이브채용설명회, 채용관, 채용상담관		
주최	산업통상자원부		
주관	한국중견기업연합회, IBK기업은행		
기업신청기간	개인신청기간	2020.05.18~2020.06.17	
문의처	02-6365-7008	FAX	02-393-8210
담당자	박람회운영사무국	E-MAIL	career@keddisco.com
사이트(출처)	http://www.fome-job.com		

「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」 제정

항공기취급업, 면세점, 전시·국제회의업, 공항버스 4개 업종 추가 지정
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

-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는 4월 27일자로 「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」를 제정했다.
 - 고시 제정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항공기취급업(항공지상조업), 면세점, 전시·국제회의업, 공항버스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(퇴직자 포함)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.
-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4월 23일 개최된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.
 -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번에 추가 지정된 4개 업종의 경우, 기존에 지정된 여행업 등 관광업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고,
 - 해외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내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진정세로 들어서더라도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하였다.
- 이번에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도 기존의 업종들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
 - 「항공사업법」 등의 개별법에서 정한 면허증·신고증·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 또는 산업부·국토부 등 관할 부처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.

□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세부 업종은 다음과 같다.

-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'기타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(52939)'이나 「항공사업법」상 '항공기취급업'으로 등록한 업체*
 - 다만, 항공기취급업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매출액의 50% 이상이 항공기취급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, 근로자(퇴직자 포함)의 경우 항공기취급업에 실제 종사하는 근로자(퇴직자 포함)가 지원 대상이 된다.
-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'면세점(47130)'이나 「관세법」에 따른 '보세판매장 특허' 취득 업체
- ③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'전시,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(75992)'이나 「전시산업발전법」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 또는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'국제회의업' 등록 업체
- ④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로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, 매출액 50%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

□ 고용보험DB 등록 자료, 관련법 등에 의한 등록업체*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추가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4개 업종의 사업장 3,800여 개소, 근로자 7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.

* 既지정 업종(여행업 등 관광·공연업): 13,845개소, 171,476명 <2020년 1월 기준>

□ 한편, 이번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통해 금년 4월 22일 발표된 대책*의 후속조치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「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」이 신설되었다. 코로나19의 영향으로 既지정된 여행업 등에도 적용된다.

* 「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」(비상경제회의, '20.4.22.)

○ 기존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.

* 일반 유급휴업 3개월 + 무급휴직 90일 → (특별고용지원업종) ^{원화} 유급휴업 1개월 + 무급휴직 30일

○ 이번 「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」 신설로 1개월의 유급휴업조차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. (한시적용)

- 노사합의에 따라(노사합의서 등 제출) 1개월 유급휴업 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,

-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,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(월 50만원)이 지원된다.

○ 다만, 기업의 경영사정, 지원요건·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, 사업주가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다.

< 특별고용지원업종 일반절차 및 신속지원 프로그램 >

특별고용 지원업종	일반절차 ⇒ 유급휴업 1개월 ⇒ 무급휴직 30일 이상 (30일 전 신고) ⇒ 최대 180일 1일 최대 6.6만원
	신속지원 프로그램 ⇒ 즉시 무급휴직 30일 이상 (7일 전 신고) ⇒ 최대 90일 150만원 한도 (월 50만원)

※ 신속지원 프로그램 전업종 확대(단, 일반업종은 유급휴업 1개월 + 무급휴직)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절차 완료 후 별도 안내 예정

□ 이밖에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사업주는 유급휴업·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, 고용·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,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고,

-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용자 소득요건 완화,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,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.

* [붙임1] 특별고용지원 업종 주요 지원 내용 인포그래픽 참고

- 이재갑 장관은 “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, 이번에 추가된 업종들은 자칫 피해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”이라면서,
 - “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들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, 이 제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.”고 말했다.

- <붙임1> 특별고용지원 업종 주요 지원 내용 인포그래픽
- <붙임2>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사업별 담당자
- <붙임3>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 관련 FAQ
- <붙임4> 무급휴업·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FAQ

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조형근 서기관(☎ 044-202-7406), 윤주희 사무관(☎ 044-202-7413), 남현주 사무관(☎ 044-202-7223) 및 개별 사업 담당자(붙임2 참고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	---

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주 지원 이렇게 바뀝니다



고용유지지원금 (유급휴업·휴직) 지원 강화



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

	특별고용지원업종	
	일반업종	신속지원 프로그램
지원요건	· 유급휴업 3개월 시행 후 무급휴직(90일)	· 유급휴업 1개월 시행 후 무급휴직(30일 이상)
지원한도	· 평균임금 50% 범위 내	· 월 50만원
지원기간	· 최대 180일	· 최대 90일

사업주 훈련지원 확대



고용촉진장려금 대상 확대

기존	· 각 부처 운영 13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
확대	·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포함

고용·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



건강보험료



국민연금보험료



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





특별고용지원 업종 근로자 지원

이렇게 바뀝니다



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

상환기간 연장	소득요건* 완화	학자금 용자 확대
<p>최대 5년 → 최대 8년</p>	<p>임금감소·소액생계비 (만원)</p> <p>월181 → 월222</p> <p>그 외 (만원)</p> <p>월259 → 월317</p>	<p>고교생 연 5백만원 → 고교, 대학생 연 7백만원</p>

* 코로나19 대책에 따라 한시적(20.3.9~7.31)으로 모든 용자 소득요건을 월 388만원으로 완화

직업훈련 생계비 대부

한도 증액
<p>1천만원 → 2천만원</p>

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

대상 확대
<p>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의 퇴직 근로자 →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의 퇴직 근로자</p>

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강화

- | | | |
|---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② 훈련비 자부담율 15~55% | →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② 훈련비 자부담율 0~20% |
|---|---|--|

취업성공패키지 II 참여 요건 완화

- | | | |
|--------------|---|---------|
| 중위소득 100% 이하 | → | 소득요건 면제 |
|--------------|---|---------|

훈련연장 급여 지급 요건 완화

-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술자격증 소유 등 4개 요건 충족 | → | 직업훈련을 받으면 재취업하기 쉽다고 인정되는 경우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1	고용유지지원금·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장려금TF 남현주 사무관(044-202-7223), 백경남 사무관(044-202-7229)
2	고용·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고용보험기획과 성준경 사무관(044-202-7359)
3	건강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및 체납처분 집행유예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김도균 사무관(044-202-2706)
4	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원지영 주무관(044-202-3636)
5	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유예 장애인고용과 신호빈 사무관(044-202-7498)
6	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사업주 과태료 면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조일한 사무관(044-202-7370)
7	고용촉진장려금 고용정책총괄과 배지연 사무관(044-202-7213)
8	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일학습병행정책과 이승욱 사무관(044-202-7309)
9	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인적자원개발과 권유리 사무관(044-202-7308)
10	훈련연장급여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사무관(044-202-7374)
11	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 퇴직연금복지과 배정대 사무관(044-202-7561)
12	취업성공패키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이지수 사무관(044-202-7375)
13	국민내일배움카드 인적자원개발과 진영훈 사무관(044-202-7313)
14	체당금(공인노무사 조력지원) 퇴직연금복지과 조경선 사무관(044-202-7563)

1. 공항에서 조업 중인 인력공급업체 사업주입니다. 우리 업체도 특별 고용지원 업종 지원 대상에 해당할까요?

- 인력공급업체라 하더라도
 「항공사업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
 ‘항공기취급업’을 등록한 업체이면서
 - 매출액의 50% 이상이 항공기취급업과 관련된 업체라면
 지원대상에 해당
- 다만, 「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」의 경우,
 매출액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할 예정임

2. 공항에서 조업 중인 인력공급업체 근로자입니다. 저도 지원 대상에 해당할까요?

- 소속사업장이 인력공급업체라 하더라도
 (매출액 기준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업체 여부와 관계 없음)
 「항공사업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
 ‘항공기취급업’을 등록한 업체이고,
 - 본인이 항공지상조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증명*할 수
 있다면 생활안정자금 용자 등 근로자 지원사업의 대상에 해당

* 공항 출입증, 근무장소·업무의 내용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등

3. 인력공급업체입니다. 매출액의 50% 이상이 항공기취급업과 관련된 업체만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된 이유가 있나요?

- 이번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旣지정된 관광·공연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해외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직접적인 피해가 큰 업종임
- 인력공급업체의 경우 항공지상조업 외에 다른 업종으로도 다수의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가 있는 바,
 - 위와 같은 지정기준을 고려하여 매출액의 50% 이상이 항공기취급업과 관련된 업체로 한정하였음

4. 공항버스 운영업체입니다. 우리 업체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대상에 해당할까요?
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 중
 -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, 매출액 50%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

5. 공항버스 노선을 운영중인 노선버스업체입니다. 매출액의 50%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만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이유가 있나요?

- 이번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既지정된 관광·공연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해외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직접적인 피해가 큰 업종임
- 노선버스 업체 중 공항버스 운영 비중이 일부인 업체들이 있는 바,
 - 위와 같은 지정기준을 고려하여 매출액의 50%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로 한정하였음

6. 시내버스 운영업체입니다. 왜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을까요?

- 이번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既지정된 관광·공연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해외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직접적인 피해가 큰 업종임
 - 따라서 국내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진정세로 들어서더라도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들이 지정됨
- 향후 기 마련·추진중인 정부 지원책의 효과, 코로나19 고용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다른 업종들의 추가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

7. 전시업체입니다. 우리 업체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대상에 해당할까요?

-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시,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(75992)에 해당하거나
- 「전시산업발전법」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

8. 국제회의 기획업체입니다. 우리 업체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대상에 해당할까요?

-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시,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(75992)에 해당하거나
- 「관광진흥법」상 국제회의업이면서 동법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된 업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

9. 새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지원은 소급*되나요?

* 예) 관광·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시기(始期)인 3.16로 소급

○ 소급되지 않음

- 이번에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지원은 고시제정일부터 적용될 예정

10.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된 업체는 무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○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된 업체는 유급휴직·휴업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과 지원한도가 상향되고

-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직 없이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“무급휴직 지원 패스트트랙”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

○ 이 외에도 고용·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집행유예가 이뤄지고

- 건강·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등의 혜택이 지원됨

11. 특별고용지원 업종 내 근로자는 무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- 특별고용지원 업종 내 근로자에게는
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소득요건 완화 및 한도액 상향이 이루어짐
- 이 외에도 취업성공패키지Ⅱ의 실업자 소득요건이 면제되고 국민내일배움카드의 5년간 훈련비 지원금액이 상향 등의 혜택이 지원됨

12. 기존에 지정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내용과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?

- 지원시기(始期) 즉, 지원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를 뿐
- 지원내용 및 지원종료 시점(9.15.) 등은 동일

1. 무급 휴업·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무엇인가요?

□ 근로자 실직 예방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·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·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(‘13.4월~)

2. 일반적 지원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1. 지원요건 확인	2. 무급 휴업·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 제출 (무급 휴업·휴직 실시 30일 전)	3. 신청 승인 후 통보	4. 무급 휴업·휴직 실시 (휴업 30일 이상, 휴직 90일 이상)	5. 지원금 신청 및 지급
√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인지 √ 법령상 무급휴업·휴직 요건을 갖추었는지	√ 사업주가 신청 - 개별 근로자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	√ 담당 고용센터	√ 신청한 계획서에 따라 무급 휴업·휴직	√ 사업주가 신청 √ 근로자에게 지급

① 먼저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②법령상 무급휴업·휴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 < 아래 구체적 요건 확인 >

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 기준*

* 다음의 기준 중 하나의 요건 충족

기준		제출 서류(예시)
재고량	50% 이상 증가(직전 년도 평균 대비)	재고대장
생산량	30% 이상 감소 (직전 3개월 평균, 직전년도 같은 달,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)	생산대장
매출액		매출액 장부 손익계산서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POS, VAN로 확인된 매출액 등
재고량, 매출액 추이	재고량이 계속 20%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이 계속 20% 이상 감소 추세 (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)	재고대장, 생산대장 등

② 무급휴업·휴직 요건 충족(각각의 아래 요건 모두 충족)

기 준		제출 서류
무급 휴업	1) (무급휴업 기간) 30일 이상 실시 2) (대상자)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 - 19명 이하: 50% - 99명 이하: 10명 이상 - 100명 이상 999명 이하: 10% - 1000명 이상: 100명 이상 3)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4) 평균임금 50% 미만의 휴업수당 지급	1) 노동위원회 승인서 2) 노사협의회 회의록 또는 노사협약서, 개별근로자 동의서 등 3)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무급 휴직	1) (무급휴업 기간) 90일 이상 실시 2) (대상자)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 - 99명 이하: 10명 이상 - 100명 이상 999명 이하: 10% - 1000명 이상: 100명 이상 3) 고용유지조치(휴업) 사전실시(무급휴직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) 4)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따라 임금 등 지급하지 않아야 함	1) 노사협의회 회의록 또는 노사협약서, 개별근로자 동의서 등 2)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- ② ①, ② 요건을 모두 갖추신 경우 무급 휴업·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휴업·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고용보험 누리집 (www.ei.go.kr) 또는 고용복지+센터 기업지원과(팀)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③ 제출하신 신청서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무급휴업·휴직 계획 등이 승인되면, 신청한 계획에 따라 무급휴업·휴직을 실시하신 이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.

2-1. 누가 신청하나요?

- 무급휴업·휴직에 대한 노사합의를 거쳐 사업주가 무급 휴업·휴직 실시 30일 전에 신청하고,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.

2-2. 노사합의는 꼭 거쳐야 하나요?

-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사업주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노사합의는 필수적 요건입니다.

- 무급휴업·휴직의 경우 근로자 생계불안으로 노사갈등과 고용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전제로 무급 휴업·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
3. 무급휴직 지원금은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기업은 신청할 수 없나요?

- 무급휴직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사대등성이 약해 사업주 일방의 결정에 따라 무급휴직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,
 - '13.4월 사업을 시행한 당시부터 무급휴직 대상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.

- 1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라도 최소 10인 이상의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을 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- 영세사업장(근로자 10인 미만) 무급휴직자는 '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' 또는 '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'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
4.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- 노사합의를 거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5.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?

- 동일한 기간동안 동일한 근로자에게 고용촉진장려금, 고용창출장려금,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,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.
- 또한, “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” 등 유사사업과도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.

6. 제출한 계획과 다르게 무급휴직을 실시해도 되나요?

* (유사 질의) ▲ 무급휴직 대상근로자를 해당 기간 동안 근무시키는 행위 ▲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관련 서류 위·변조하는 경우 등

- 안됩니다.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무급휴업·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,
 - 지급 제한·추가 징수(최대 5배)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
- 따라서, 무급 휴업·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후 사유가 생겨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10일 전까지 온라인(www.ei.go.kr) 또는 방문하여 변경신고를 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.

<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속 지원 >

7.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지원 기준이 다른가요?

그렇습니다.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*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1개월 + 30일 이상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* "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정된" 특별고용지원업종이므로 조선업은 제외

한편,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유급휴업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, 다른 요건은 동일하나 1개월 유급휴업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만 실시하여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현행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(Two-Track)으로 지원 수준·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하시고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.

< 특별고용지원업종 일반 절차 VS 신속지원프로그램: 노사합의를 통해 선택 >

특별고용 지원업종	일반절차	⇒	유급휴업 1개월 실시	⇒	무급휴직 실시 (30일 전 신고)	최대 180일 1일 최대 6.6만원
	신속지원 프로그램	⇒			즉시 무급휴직 실시 (7일 전 신고)	최대 90일 월 50만원

* 일반절차와 신속지원프로그램 중 하나만 선택 가능(중복지원 불가)

8. 언제부터 새로운 요건에 의한 신청이 가능한가요?

-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이루어진 '20.4.27. 이후 실시할 무급 휴직에 대해 7일 전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
 -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무급휴직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.
 - '20.9.15.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계획으로 8.16.까지 무급휴직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(30일 이상 무급휴직)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.

9.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나요?

- 4.27.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.
 - 이는 소급 지원 시 실제 무급휴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부정수급 등 제도 악용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.
- '20.4.27. 이전('20.3.1.~4.27.)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10.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- 현행 요건에 따른 무급휴업·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평균임금의 50% 수준에서 일 최대 6.6만원, 최대 180일까지 지원가능*합니다.

* 무급휴업·휴직 계획 승인시 결정

- 새로운 요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총 90일(3개월) 간 최대 150만원(월 50만원*)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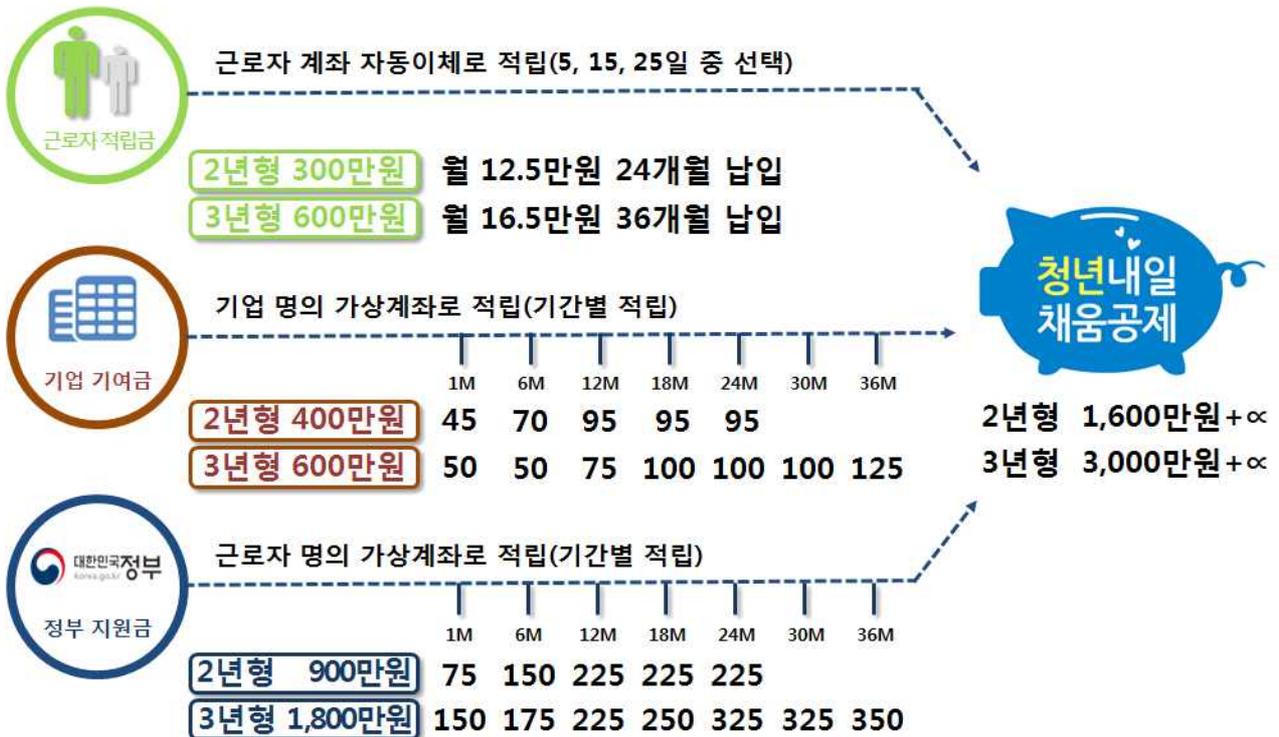
*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사 지원사업(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,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)과 지급수준을 동일하게 설정

11. 모든 피보험자에게 지원되나요?

-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20.2.29. 이전(2020.2.29. 포함)인 피보험자가 지원 대상입니다.
- 다만, 1개월 미만 고용되는자(일용근로자),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

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

- **[개요]**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「청년내일채움공제」 신설(16.7월)
 - 신규취업 청년의 일정기간 근속 및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보태어, 만기 시 일시금을 수령하는 일종의 '3자 공동적금'
- **[지원대상]** 중소·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'청년' 및 '채용기업'
 - (청년) 만 15~34세 중소·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
 - * 생애최초 취업자 원칙이며, 예외적으로 '최종학교 졸업 후 고보 가입 총 12개월 이하' 가입 가능(3개월 이하 단기가입 기간은 기간산정 시 제외)
 - (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(벤처기업,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)
- **[지원방식]** 가입기간 동안 청년·정부·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



* 기업은 2년 450만원 또는 3년 670만원의 지원금 중 4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청년에게 기여

- **[중도해지]** 본인 납입분 전액 및 지원금 일부를 해지금으로 지급
 - (본인 납입분) 해지 시까지의 납입액 전액 **환급**(해지사유 무관, 2, 3년형 동일)
 - (기업 기여금)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 전액 **정부 환수**(“)
 - (정부 지원금) 해지 시까지 적립된 지원금의 일부를 청년에게 지급
(2년형은 50%, 3년형은 30% 수준)

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기관 현황 [총 4개소]

운영기관명(대표전화)	운영기관명(대표전화)
(주)커리어넷 서울북부지사(02-2006-9583)	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(02-3399-7651)
인크루트알바콜(주)서울북부지사(02-2186-9059)	(사)한국직업지도진흥원 노원지부(02-6959-5570)

2020 기업지원제도 안내

1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종류

●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식자료실 → “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업지원 등 주요 내용” 검색

1	고용창출장려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(심사형, 요건형) ② 청년추가고용장려금 ③ 국내복귀 기업 지원(심사형) ④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(심사형) ⑤ 고용촉진장려금지원
2	고용안정장려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정규직 전환지원(심사형), ② 워라벨일자리장려금 ③ 일·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(심사형), ④ 출산·육아기고용안정 장려금 지원
3	고용유지지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고용유지지원금, ② 무급 휴업·휴직고용유지지원금
4	장년고령자고용장려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, ②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

2 중복지원 사업 대상

양 장려금	중복 시	지원 비율
일자리 함께하기 (100% 지급)	고용창출장려금	+ 70% 추가지원
	고용안정장려금	+ 100% 추가지원

3 문의처

○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기업지원팀 (☎ 02-2171-1800~5)

○ 기업지원 사업별 주요 내용

고용장려금 지원사업		지원내용
고창 장려금 공출금	일자리 함께하기 지원	(공모형) 교대제 개편, 실 근로시간 단축,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[증가한 근로자 1인당] -인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 월80만원,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, 1~2년 지원 -임금감소액보전: 월 최대 40만원 지원(사업주 보전임금의 80%한도) ·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[증가한 근로자 1인당] -인건비: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월 40~100만원, 1~2년 지원 -임금감소액보전: 월 최대40만원, 1~2년 지원(사업주 보전임금의 80%한도)
	청년추가 고용장려금	· 청년(만15~34세 이하)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이상 중소, 중견기업(성장유망업종, 벤처기업 등은 5인미만도 가능) 사업주 [청년 추가채용 1인당] 연 최대 900만원, 3년지원
	국내 복귀 기업 지원	·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[증가한 근로자 1인당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, 중견기업 월 30만원
	신중년적합 직무고용지원	· 만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[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, 중견기업 월 40만원
	고용촉진 장려금 지원	·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이수자,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,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[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
	고안 장려금 공정금	정규직 전환지원
위라벨일자리 장려금		·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한 사업주 [전환된 근로자 1인당] 임금감소 보전금: 월 최대 40만원, 대체인력인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, 간접노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·중견기업 월 20만원
일.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		· 시차출퇴근제, 선택근무제, 재택근무제, 원격근무제를 도입·확대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[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] 간접노무비: 1주당 5~10만원, 재택·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: 시스템 구축비의 1/2 이내, 2,000만원 한도(기업당)
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		· 육아휴직등 부여: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· 대체인력지원: 출산전후(유산사산)휴가,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[해당 근로자 1인당] -대체인력인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(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)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-육아휴직등 부여 간접노무비: 육아휴직 월30만원(대규모기업 제외),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월30만원(대규모기업 10만원)
고유 지원금	고용유지 지원금	·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·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* 지원사항 별도 문의
	무급 휴업·휴직 고용유지지원금	·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·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·휴직필요성, 근로자 복귀 가능성, 직업능력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* 지원사항 별도 문의
장년· 고령자 고용 장려금	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	·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(1~23%)을 초과하여 고용 [지원수준]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근로자수의 20%까지. 다만, 일지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원기준을 산정 시 제외
	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	·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·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정년연장, 정년폐지, 재고용하는 사업주 [지원수준]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(분기별 신청), 최대 2년간 지원